

이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7. 1.
내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6월 12일 이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6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96.6.22), 제2차(96.6.24) 내부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강호영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건강 증진법(법률 제4914호 95. 1. 5)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주민,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,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지식보급 및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촉함(안 제3조)
-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행정시책에 반영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고요지 (전문위원 안봉환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이 법률 제4,914(95.1.5)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,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, 운영하고자 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 조례안 제9조의 수 당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일부수정의결 (반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수정조례안 첨부

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제10조중 “위원 및 실천운동에 참석하여 발언하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있다”를 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(이 하 생 략)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10조 (수당등) 법의회.문화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실천운동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	제10조 (수당등)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